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목돈을 불리는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u>목돈을 불리는 통장 특약(구 하나은행)</u>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“목돈을 불리는 통장”(이하 “이 통장” 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“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”</u>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5 조 (생략)</p>	<p><u>『목돈을 불리는 통장』 특약</u></p> <p>제 1 조 적용범위 “목돈을 불리는 통장(이하 “이 통장” 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한다.</p> <p>제 2 조 가입대상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로 한다.</p> <p>제 3 조 ~ 제 5 조 (좌동)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